

프라이버시와 센세이셔널리즘을 보는 영국의 시각

이 보고서는 영국의 제 3 차 왕립위원회(Third Royal Commission)가 1977 년 7 월에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이 보고서의 제 10 장 「언론행위」를 초록한 것으로 「Columbia Journalism Review」 1978 년 1 · 2 월호에 게재되었던 것을 번역한 것이다. 참고로 제 1, 2 차 왕립위원회는 각각 1949 년과 1962 년에 구성되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제 3 차 왕립위원회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독립성, 다양성, 편집기준 및 공중이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견지해 나가는 데 미치는 제요인을 조사」하라는 윌슨수상의 촉구에 따라 구성된 바 있다..... 편집자 주

언론을 평가할 때 주관성을 배제하기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그 자체가 헛소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의 견해로 보건대, 신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입수한 기사거리를 선정적으로, 독자들에게 게 음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공표하면서도 그러한 기사는 국민의 도덕성을 강화한다고 타당성을 부여한다면 헛소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교육적인 기사나 중요한 정치적인 논쟁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문을 오락적인 기사만을 게재한다고 비관한다면 이것도 헛소리로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과 언론 비판자는 늘 이런 류의 헛된, 과장스런 비판과 변호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위험인 것이다. 그리고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도 쉽사리 이러한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이 라든지 정확성,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언론을 평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흐른다면 때로는 피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들은 저널리즘의 어떤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고 본다. 저널리즘의 문제 중에는 기사수집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장을 통해 본 위원회는 몇몇 전국지가 사생활을 취급하는 방식이 언론행위의 가장 좋지 못한 것 중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본위원회가 신문평의회(Press Council)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개입할 생각은 없으며 또는 어떠한 사례도 여기서 다시

공개하고 싶지도 않다. 신문평의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가장 옳지 못한 사례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신문은 자신들의 침해행위를 통상 문제가 되는 인물이 「공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상실한 「공적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런 경우에 「공익」이라는 낱말도 흔히 쓰임을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신문평의회 선언은 공중의 관심을 끄는 기사와 공익적인 면에서 공표할 필요가 있는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민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표하는 것도 그것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을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혀 놓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언론인들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본 위원회가 편집인 및 언론인들에 관해 조사(survey)하기 위해 이 업무를 사회 및 지역사회계획연구(Social and Community Planning Research)에 의뢰했을 때, 설문지마다 개개인의 응답내용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인 언론인들로부터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편집과정에서 오래된 언론인 명부를 이용했다는 데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상 몇몇 언론인들은 설문에 합하는 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통상 공중의 「알 권리」를 옹호해 온 저널리스트들의 신문인 「UK Press Gazette」는 조사 (Survey)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인 일이 있다. 몇몇 편집인들은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정도라든지 투표성향을 묻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설문의 부당성에 대해 본 위원회에 직접 불평을 해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생각한다. 「New of the World」의 편집인인 버나드 쉬림슬레이(Bernard Shrimmsley) 씨는 이러한 조사를 두고 왕립위원회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공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감출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때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본 위원회는, 누구에게나 프라이버시권이 있으며, 명백하게 공익과 연관된 사항일 경우에만 신문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침해의 유형으로는 기사거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이다. 사기행각을 벌여서 기사를 입수하여 공표한 「News of The World」를 신문평의회가 견책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New Group Newspapers」에서 구두증언을 해온 일이 있어서 본 위원회가 그 신문의 편집국장인 램(Lamb)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기자가 외국에서 섹스 쇼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믿어버린 모씨에 관한 사건이었다. 모씨와 그의 파트너는 기자의 피임에 빠져서 관중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들의 활동을 들려주었다. 램씨는 그러한 속임수를 쓴

「News of World」를 견책하지 않은 신문평의회에 잘못이 있다는 견해를 본 위원회에 전해왔다. 본 위원회도 램씨의 이야기가 옳다고 본다. 「News of the World」에서 램씨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거론했던 보도기준을 늘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그 기자는 공중의 호기심은 몰라도 공익적인 측면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사거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 기자는 1976년 말에 사교잡지에 난 섹스관계광고를 보고 참여하고 싶다는 당장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광고인의 신원을 알아내고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고발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다. 그 기사에서는 섹스 쇼를 벌인 자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고 단지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New of the World」 1977년 3월 27일자 신문 1면에 『소녀들에게 성행위 강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고발형식의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는 코펜하겐에서 있을 섹스 쇼에 같이 참여할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던 모씨에 대해서도 인물평을 해놓았다. 모씨가 받았던 회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바로 그 기자였던 것이다. 기사 어느 구석에도 모씨가 범법위를 했다고는 시사하지 않았다. 이런 류의 언론행위는 섹스 쇼만큼이나 불미스러운 행위이며 언론인들의 명예를 손상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사기행위는 중요한 공적인 이슈와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섹스 쇼를 폭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수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종류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기란 어렵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경우와 사기행위가 정 시 되었던 부패경찰공무원을 폭로한 「Times」의 경우는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윌리엄 디데스(William Deedes) 씨는 가십 컬럼과 무절제한 대중신문이 존재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이 치뤄야 할 대가라는 이야기를 어느 글을 통해 설득력있게 개진해 왔다. 우리도 그러한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에 대해 개탄할 수 밖에 없다. 신문평의회는 과거에 권장해왔던 것보다 보다 더 엄중한 기준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센세이셔널리즘은 신문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센세이셔널리즘이 다른 비판에 견주어서 두드러진 문제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은 편견, 부정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노사관계를 보도하는데 있어 옳지 못한 뉴스를 취급하면서 그 배경을 심층보도하지 않는데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와 비슷한 비판을 다른 곳에서도 역시 들을 수 있었다.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에서는 중재신청서를 통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가 소수민족에 대해서 공중이 갈등 및 투쟁과 연관시켜 생각하게끔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청서에서는 이민과 흑인이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기사의 사례를 열거해 놓고 있다. 또한 좋지 못한 뉴스를 그 배경과 추이를 잘 읽어서 보도하려고 노력한

사례도 인용하고 있다.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은 신문평의회에 인종관계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특별강령을 채택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이 인종관계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은 편집정책을 수정해서 좀 더 배경을 알려주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다수 최신뉴스를 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서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종관계를 보도할 경우,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침에서는 균형성, 객관성, 결제성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지침은 어느 종류의 기사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회에서 신문평의회에 제안한 강령은 위원회의 제안 중 대부분을 골자로 한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취재원을 확인한다든지, 적절하게 지식을 갖추고 보도해야 할 것이리든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스테레오타입으로 기사화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인종관계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신문이 특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기만 한다면 신문은 신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표 저널리즘(checkbook journalism)은 센세이셔널리즘의 구체적인 형태의 하나다. 무어즈살인범 재판(Moors Murder trial)에 대한 언론활동이 있을 뒤 신문평의회는 1960년에 수표 저널리즘에 대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법정모욕위원회(The Committee on Contempt of Court)는 증언에 대한 금품사례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지 조사해야만 한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그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면 새로운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모욕위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문평의회가 강령에서 다루지고 있는 문제들까지를 다루면서 수표 저널리즘 관해서 신문과 신문평의회를 조사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본 위원회에서는 1960년에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같은 증인에게 금품을 사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신문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조사에 협조해 주었다. 예를 들어 「New of the World」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기사를 샀던 유용한 사례 목록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그렇게 기사를 사게 된 편집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았고 또 그것을 게재하게 된 이유까지 밝혀놓았다. 다른 신문사들도 역시 그들의 견해와 정책을 개선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정보에서는 몇몇 신문에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자들로부터 기사를 공익의 측면에서 매수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음란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기사를, 공중은 흥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쓰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장 센세이셔널하게 과장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신문끼리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Sunday people」

1978년 7, 8월 호에 게재된, 블랙 팬더(Black Panther)가로 유명해진 집안의 말의 이름으로 게재된 기사이다.

본 위원회는 수표 저널리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문평의회에 대해서는 강령준수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과, 강령을 위반한 신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몇몇 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언론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언론의 부정확성이란 오랜 역사를 가진 비판의 대상이다. 존 고든(John Gordon) 씨는 제 1차 왕립위원회(1947-1949)에서 부정확하기로 유명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직접 뉴스의 대상이 된 사람의 경험담을 기술했다. 지방신문 뉴스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있는 유력한 인사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절반은 뉴스의 정확성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1/4 가량은 매우 비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읽는 지방신문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40 퍼센트 이상)와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와 비교해서 전국지에 대한 평가는 16%로 대중적인 전국지의 경우에는 31%로 나타났다. 요즘 언론이 이러한 도전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신문내용 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며, 기사내용의 문맥과 의미가 잘 통하도록 노력하면서 출처가 분명한 진실보도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신문은 부정확한 것으로 비평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신문이 배경이나 전후사정을 적절하게 보도하지 않았으므로써 부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편견을 논의하면서 언급해왔던 뉴스가치를 왜곡할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읽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보도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신문과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건과 제도에 관한 소식을 얻는 주요 정보원인 것이다. 언론은 좋은 뉴스든,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든 충분한 전후사정을 밝혀줌으로써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후사정을 무시하는 보도는 이해는커녕 편견만을 남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광고주가 신문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이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제 1차 왕립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제 2차 왕립위원회에서도 물론 다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본 위원회에 제시한 증거로 보건데 크게 두드러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광고주의 압력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차원 즉 일반적 차원과 특수한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고의존이란 곧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광고주에게 호감을 주는 방향에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비판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비판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상의 내용이 광고되는 상품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광고주의 상품에 관한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문에 관한, 신문내용의 전반적인 형평성이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과도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맥퀘일(D. McQuail) 교수가 신문내용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1947년과 1975년 사이에 서로 다른 주제에 할애한 지면량을 측정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만일 광고주의 영향력이 소비자지출액의 증가와 함께 상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문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큰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잡지와 기타 특수전문영역의 잡지에서는 편집기사는 그 출판물에 게재되는 광고상품과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사진관계 잡지라든지 자동차운전에 관한 잡지가 이러한 예들이다. 그러한 잡지의 경우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광고주가 개인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간행물의 내용에 대해,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기사를 신게 한다든지 또는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신지 않게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특수한 연구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조사임무는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광고주의 영향력에 관한 토론에서 찰스 윈투어(Charles Wintour) 씨는 광고주가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게재하는 기사의 경우와 광고주기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서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옳지 못한 것일까? 만약에 그 제품이 훌륭한 것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제품이 나쁘다면 광고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문은 광고주들에게는 일종의 쇼윈도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품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혜택을 볼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그 같은 점을 인정한다면 광고가 신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윈투어 씨는, 이어서 자신은 광고주의 상품이나 활동을 보도할 때 그들이 상품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비판받아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본 위원회는 비판을 무마하려고 한 사례 한, 두 가지를 우연히 접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사례는 지방신문의 소비자총고 칼럼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분개한 어느 차량정비소의 업자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건이었다. 이 같은 협박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광고주가 왜 분개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압력사례는 한탄스러운 것이다. 그러한 협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언론인들은 그들의 비판기준을 얼마나 낮춰가면서 협박의 위험을 피하고 있는지 본 위원회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구성되었던 왕립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2차 왕립위원회도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같은 압력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의사는 없다.

본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 중, 5월 19일자부터 21일자까지 「Daily Mail」지에 연재된 British Leyland(자동차회사)의 뇌물공여에 관한 기사 및 논평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현내각의 수상은 본 위원회가 몇몇 신문의 정치적 편견과 당파성 그리고 신문평의회와 효율성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했다. 여기서도 다시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조사를 미뤄야만 할 것 같다. 앞에서도 쓴 일이 있지만,이

사건은 현재 민형사소송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수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고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쟁송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Daily Mail」지의 진술에서, 근거로 삼는 편지는 모순으로 가득찬 위조 편지였다는 점이다. 그 편지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편지를 쓸 것으로 되어 있는 라이더(Lord Lyder) 경은 기사가 공표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뇌물공여 주장은 매우 직선적이고도 강렬한 어투로 작성된 것이었다. 5월 19일자 기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더 경이 기도한 방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브리터쉬 레이랜드 측에 대해 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 중개인과 해결사에게 뇌물을 수 차례 증여했다. ● 영연방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국가에서 세금 및 통화규정을 교묘하게 위반하거나 그렇게 할 음모를 꾸몄다. ● 바가지요금 씌우기. 이렇게 해서 거래선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수많은 은행과 구좌를 개설했다. ● 런던의 비밀장소에 돈가방에 든 큰 액수의 현금을 인도했다.」 동일자 신문의 사실란에 게재된 논평 역시 강한 논조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었다.

「믿기지는 않지만 라이더 경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그의 행동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낌없이 정열을 쏟아 왔던 브리터쉬 레이랜드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칼라간성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성명서와 부피를 근절하겠다는 통상상인 델씨의 서약에 사인한 직후이기에 고위층에서의 이러한 사례는 언어도단인 것이다」.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이 기사는 이 보고서의 제 20장에서 언론의 중대한 비행의 한 예로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확한 소식을 근거로 한 근본적으로 비판을 남용한 사례라고 본다.

신문평의회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고 편견으로 가득찬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엄중한 기준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란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더욱이 본 위원회는 신문평의회에서는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강령이 있음으로 해서 공중은 언론행위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상이 의문을 제기해 온 문제는 「Daily Mail」지의 부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볼 때 본위원회가 이 보고서에서 건의하고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본위원회가 담당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언론이 강한 당파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언론이 좌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불평을 많은 사람들과 기관에서 본

위원회에 제기해 왔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통해 언론이 노동운동의 신념과 활동을 적대시 해왔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좌파계의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언론이 그렇게 당파적이지는 않다는 증거가 있다. 우익계의 몇몇 신문에서는 노동당 당수나 노동당 당원 또는 노동조합원의 명예를 손상하는데 이용할만한 불명예스러운 자료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뇌물공여」 관계기사는 유감스러운 사례이다. 그렇지만 「Daily Mail」지가 오랜 시기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정론적이고 정치적인 당파성이 강하다는 것은 새로운 증거는 아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신문이 확인절차 없이 부당한 정보를 근거로 정부를 공격할 자세를 강렬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전반적인 견해와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할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언론에 있어서 의견의 형평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거부한다는 견해를 제시해 놓고 있다. 새로운 신문을 발행하는데 돕기 위한 자금을 할당하고자 하는 계책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기금을 배당함에 있어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생각을 개선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편집상의 경제상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정당신문이든 아니든 신문을 새로 발행토록 참으로써 현재의 당파적인 신문에 의한 무책임한 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신문의 내용과 행위때문에 발생하는 정치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좌익계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을 통하여 전국지들이 안고 있는 갭을 메워야 할 것임을 지적해왔다. 이미 우리도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신문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일 소유형태와 정치적인 당파성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신문의 내용을 다룰 법규를 강화해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 「Daily Mail」지의 경우에 비춰볼 때 앞으로 운용될 법을 어떻게 기초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 언론을 운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인 것이다. 법으로 하든 자율적인 방법으로 하든 신문을 규제하는 유일한 방식은 사전규제방법이 아니면 사후 규제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할지도 모르는 벌금과 언론인 자격정지와 같은 규제는 거부한다.

언론이 당파성을 보이는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현재처럼 법과 자율기관인 신문평의회제도를 통해서만 규제하고, 20장에서 제안할 신문평의회 운영방식을 강화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언론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규제절차를 밟아서 규제할 것이라는 확신과 독자들의 책임있는 판단에 필요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정책도 운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자유로운 사회는 몇몇 무책임한 행동도 자유에 따른 대가로 보고 관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결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Daily Mail」지가 브리티쉬 레이랜드측에 가한 무책임한 행위는 신문에 대한 냉소주의와 정치적인 적개심을 자극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입법조치를 통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압력도 사실상 나올 수 있을 법한 것이었다.